

선정배제 및 취소기준

(제7조 관련)

1 신청기업 선정배제 기준

매칭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투자 승인을 배제한다. 단 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은 설립당시에 관련된 사안을 적용한다.

① 매칭투자 신청기업

구분	내용
설립 및 증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매칭투자 마감일 전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구주 매매, 증자 및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회사 설립 및 증자과정에 자본금 미납, 가장납입 또는 차명 거래가 있는 경우매칭펀드 신청 내역과 증자 내역의 중요한 내용(의사록, 계약서 등의 투자단가, 총투자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
소송 및 계약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매칭 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 이거나, 투자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기업 투명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매칭 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주주·엔젤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 또는 주주, 엔

구분	내용
	<p>젤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p> <p>8. 엔젤투자자, 매칭투자 신청기업, 조합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p> <p>9. 기타 매칭 투자 신청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는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부 R&D 등 지원 자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협조 거부	<p>10. 한국벤처투자자와 엔젤투자지원센터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p> <p>11. 엔젤 매칭투자 심사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p>
기타	<p>12. 매칭 투자 신청기업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거나, 매칭대상이 되는 창업초기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13. 엔젤투자자 투자시 기업가치가 50억원(post-money 기준) 이상인 경우</p> <p>14. 대표이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p>15. 매칭펀드 투자 전 VC 등으로부터 1억원 초과 투자를 유치한 경우</p> <p>16.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직원 급여 체납이 있는 경우</p>

② 엔젤투자자

구 분	내 용
설립 및 증자	1.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가장 납입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익이 아닌 차명으로 납입한 경우 2. 엔젤투자자가 진정한 투자의사 없이 매칭투자를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춘 경우 3. 매칭투자 신청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현물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 4. 공동 투자한 엔젤투자자간 투자단가가 상이한 경우
소송 및 계약위반	5.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6. 매칭투자 신청 엔젤투자자가 1년 이내 주식처분 제한 및 조합의 공동매도권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 이거나, 주주간 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펀드운용 방해 및 부정행위	8. 엔젤투자자가 부당한 거래요구, 금전 또는 물품 요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9. 엔젤투자자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매칭펀드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법인 등 포함)이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이 발견된 경우. 다만, 엔젤클럽이 투자 설명회(IR) 실비 총당 목적으로 투자기업당 총액 100만원 한도내의 자금을 수취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투자기업과 특수관계	11. 엔젤투자자가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경우 또는 엔젤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다만, 엔젤투자자가 무보수 사외이사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료 제출 협조 거부	12. 한국벤처투자회와 엔젤투자지원센터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엔젤투자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 분	내 용
후속 투자	13.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 기 투자 기업에 투자하고자 할시, 투자기업이 매칭펀드 기 투자 금액의 70% 이상을 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타	14. 엔젤투자자 또는 엔젤클럽이 매칭펀드 운영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된 제재(매칭제한)를 받고 해당 제재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15. 기타 엔젤투자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소, 재판계류, 선고 등 형이 미확정된 상태인 경우 나. 성견후견자, 한정후견자, 특정후견자, 임의후견자인 경우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클럽 관련 특칙	16. 엔젤클럽을 통한 신청시 해당 엔젤클럽의 회장 또는 총무 등 실질적으로 엔젤클럽 실무를 집행하는 자가 매칭펀드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7. 엔젤클럽을 통한 신청시 해당 엔젤클럽이 매칭대상 엔젤클럽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젤투자 활동 보고서 미제출, 연간 투자실적 유지 조건 미충족 등) 18. 엔젤클럽을 통한 신청시 해당 엔젤클럽의 회원이 매칭 신청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전문엔젤 관련 특칙	19. 전문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 투자이후 3개월 내에 투자이행약정서에 따라 투자하지 않은 경우
개인투자조합 관련 특칙	20. 엔젤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인 경우 매칭 신청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 취소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 된 경우

* 특칙의 경우 해당 유형의 엔젤투자자에게만 적용

② 선정기업 선정 취소 기준

1. 매칭투자 최종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매칭투자 최종 승인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청산,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3. 엔젤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상 법령 위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최종 선정 후 3개월간 투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5. 매칭투자 최종 승인기업이 매칭투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제재 사항

매칭투자 최종 승인 후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80일간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투자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